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용 대형 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해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82호, 2025. 12. 2. 공포, 2026. 12. 3. 시행)됨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 차량, 정기점검의 항목·방법·절차, 정비기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 (정기점검의 대상)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화물·특수자동차 중에 별표 1의 규모별 세부기준에 의하여 대형에 속하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가변축이 설치된 차령 8년 이상(차령 7년 경과)인 자동차를 말한다.

제60조 (정기점검의 기준 및 신청) ①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정기점검은 법 제53조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이하 “정기점검 시행자”라 한다)가 그 사업장 안에서 시행하며, 점검항목 및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정기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시행자에게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정기점검 시행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60조의2(정기점검의 실시 등) ①대형 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정비시설을 갖춘 정기점검 시행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정기점검 신청을 받은 경우 제60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정기점검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점검 결과를 자동차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정기점검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 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적합 판정을 하고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1. 제동장치

가. 브레이크캘리퍼의 균열, 심한 부식, 마모

나. 브레이크캘리퍼의 피스톤 및 가이드로드의 고착

다. 브레이크 드럼(디스크)의 균열, 심한 부식, 마모, 열변형

라. 라이닝(패드)의 균열, 심한 부식, 마모, 열변형

마. 휠실린더의 피스톤 고착, 누유 및 더스트 부트 파손

바. 브레이크 슈의 균열, 심한 부식, 마모, 열변형

사. 브레이크 슈의 캠롤러, 클립, 리턴스프링, 고정핀의 마모, 변형

아. 에스캠샤프트의 고착 및 변형

자. 브레이크챔버의 미작동, 변형, 균열, 심한 부식, 공기압 누출
차. 호스(유압/공압)의 누유 및 누출

2. 주행장치

가. 차축의 균열 및 변형

나. 리프팅 암, 브라켓, 부싱의 마모, 균열, 유격, 변형

다. 축 볼트, 너트의 고착 및 나사선 변형

라. 차축 스피들의 마모 및 열변형

마. 허브베어링, 슬리브의 마모, 심한 부식, 균열, 열변형

바. 허브 오일씰 리테이너의 파손, 누유, 경화

사. 허브 베어링 록너트 및 링의 마모, 심한 부식, 균열, 열변형

아. 바퀴(타이어 및 휠) 휠볼트, 너트의 고착 및 나사선 변형

③정기점검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정기점검기록부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적합 판정(정비권고사항을 포함한다)을 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정기점검기록부를 발급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다음 정기점검 유효기간을 기재
2. 정비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정기점검기록부에 정비권고사항을 기재하여 발급

④정기점검 시행자는 제3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전산정

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0조의3(정비 및 재점검) ①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점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비를 하고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폐차·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 인해 운행을 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할 수 있다.

②재점검을 신청받은 정기점검 시행자는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다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정기점검 시행자는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점검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재점검을 정비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⑤재점검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정기점검기록부를 발급받은 날에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0조의4(점검장면의 영상관리) ①정기점검 시행자는 정기점검 및 재점검의 실시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된 점검장면을 2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촬영된 점검장면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정기점검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 및 재점검의 실시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 또는 뒷면 전체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치가 분해된 상태에서의 점검장면을 일시(분 단위까지 표시)와 장소(GPS 좌표)가 포함되도록 각각 촬영해야 한다.

1. 좌·우 제동장치의 드럼 또는 디스크 장치
2. 좌·우 주행장치의 허브베어링

제61조(정기점검의 유효기간 등) ①정기점검의 유효기간은 정기점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재점검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1년으로 한다. 다만, 가변축 일체(차축 등이 포함된 가변축 어셈블리)를 법 제30조, 제30조의5, 제34조의3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신제품으로 정비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

②정기점검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제59조에 따라 정기점검의 대상이 된 해에 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최초로 도래하는 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아 최초로 도래하는 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종전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서 연도는 현재 연도를 적용하고 월, 일은 종전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③정기점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유효기간 만료일 이내 정기점검을 받은 경우: 직전 정기점검 유효기

간 만료일의 다음 날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정기점검(재점검)을 받은 날의 다음 날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비를 받은 날의 다음 날

④정기점검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일(제61조의2에 따라 정기점검 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내에 정기점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기점검 유효기간 만료일(제61조의2에 따라 정기점검 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이 지난 후에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의 정기점검 기간은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로 한다.

제61조의2(정기점검 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정기점검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정기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점검을 유예할 것. 이 경우 대상자동차·유예기간 및 대상지역 등을 공고해야 한다.

2.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폐차·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자동차의 정기점검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점검을 유예할 것

3. 부품 수급 등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자동차의 정기점검 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정기점검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정기점검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정기점검 유효기간 연장(점검유예)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자동차 소유자가 정기점검 유효기간 내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여 정기점검 유효기간 내에 점검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 정기점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점검은 연장된 정기점검 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1. 법 제37조제2항후단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61조의3(정기점검기간 경과의 통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

된 자동차 중 제6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기간이 경과된 자동차를 조사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그 소유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한다.

1. 정기점검기간이 지난 사실
2. 정기점검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 및 그 신청방법
3.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및 근거
법규

제63조의2의 제목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을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점검·검사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1조제3항 및 제4항 따른 정기점검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명해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한다.

제64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6조의2에 따른 정기점검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제116조제1항에 제2호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점검·정비명세서”를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점검·정비명세서 및 별지제36호의2 서식의 정기점

검기록부”로 한다.

제116조제1항에 제2호 카목 “별표 21의6에 따른 작업내용 구분”을 “별표 21의6의 작업내용 구분 및 별지 제36호의2의 정기점검기록부”로 한다.

제137조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기점검 요금 : 정기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제150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36조의2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의 기록에 관한 업무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 중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2호”를 “같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7호서식에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별지 제38호서식 주 : 제1호 중 “제43조에 따른”을 “제36조의2 및 제43조에 따른 점검 또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기점검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일로부터 적용한다.

1. 차령 13년 이상(차령 12년 경과): 2026년 12월 3일
2. 차령 10년 이상(차령 9년 경과): 2027년 12월 3일
3. 차령 8년 이상(차령 7년 경과): 2028년 12월 3일

제3조 (정기점검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정기점검 만료일이 90일 이하인 경우 정기점검의 기간은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 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과 정기점검 만료일 전 90일에서 정기점검 만료일 전까지 남은 일수를 뺀 일수를 더한 기간으로 한다.

[별표 8]

정기점검 기준 및 방법(제60조제1항 관련)

구분	점검 항목	점검 기준	점검 방법
제동 장치	가. 브레이크 캘리퍼 및 휠 실린더	(1) 고착, 누유, 파손 여부	브레이크 캘리퍼의 균열, 부식, 마모, 피스톤 및 가이드로드의 고착여부, 휠 실린더 피스톤의 고착 및 누유 여부, 더스트 고무의 파손 여부를 육안으로 점검
	나. 브레이크 슈 및 라이닝(패드)	(1) 균열, 부식, 마모, 열 변형 여부	브레이크 슈 및 라이닝(패드)의 균열, 부식, 마모, 열변형을 육안으로 점검 브레이크 슈의 캠롤러, 클립, 리턴스프링, 고정핀의 마모 및 변형 여부 확인
	다.에스캠 샤프트	(1) 고착, 변형여부	풋브레이크 또는 주차브레이크의 작동을 통해 에스캠샤프트 고착 여부 확인
	라.브레이크 드럼(디스크)	(1) 균열, 부식, 마모, 열 변형 여부	디스크 및 패드(라이닝)의 균열, 부식, 마모, 열변형을 육안으로 점검
	마. 호스(유압/공압)	(1) 누유 및 누출 여부	제동 상태에서 제동유 누유 및 공기압 누출 여부를 청음 또는 비눗물로 점검
	바. 브레이크 챔버(공압식)	(1) 작동여부	풋브레이크 또는 주차브레이크 작동 및 복원 여부 확인
		(2) 변형, 균열, 부식 여부	브레이크 챔버 변형, 균열, 부식 여부 확인
		(3) 공기압 누출 여부	제동 상태에서 공기압 누출 여부를 가변축을 상승-하강하면서 청음 또는 비눗물로 점검
주행 장치	가. 축 및 구성품	(1) 차축의 균열, 변형여부	차축의 균열 및 변형여부를 육안으로 점검
		(2) 리프팅 암, 브라켓, 부상 등의 마모, 균열, 유격, 변형 여부	리프팅 암, 브라켓, 부상의 마모, 균열, 유격, 변형 여부를 육안으로 점검
		(3) 축 볼트, 너트의 고착 및 나사선 변형	축 볼트, 너트의 고착 및 나사선 변형여부를 육안으로 점검
	나. 바퀴(타이어 및 휠)	(1) 휠볼트, 너트의 고착 및 나사선 변형	휠 볼트, 너트의 고착 및 나사선 변형여부를 육안으로 점검

다. 차축 허브 구성부품	(1) 차축스핀들의 마모, 열변형	바퀴를 탈거하여 차축스핀들의 마모 및 열변형 상태 점검	
	(2) 허브베어링, 슬리브의 마모, 부식, 균열, 열변형	바퀴를 탈거하여 허브베어링, 슬리브,의 마모, 부식,균열,열변형 상태 점검	
	(3) 오일셀 리테이너의 파손, 누유, 경화	바퀴를 탈거하여 허브오일셀 리테이너의 파손, 누유, 경화 상태 점검	
	(4) 허브베어링 록 너트의 마모, 부식, 균열, 열변형	바퀴를 탈거하여 허브베어링 록 너트 및 링의 마모, 부식, 균열, 열변형 상태 점검	

정기점검(재점검) 유효기간 연장(점검유예)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형식		
	정기점검 유효기간	~		
신청내용	연장(유예)신청기간	~		
	연장(유예)사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연장(유예)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연장(유예)사유가 적합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에 연장(유예)기간을 기재·발급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정기점검기록부

점검구분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자동차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성명(상호)		
	최초등록일		차명		차종		
	모델연도		다음 정기점검기간 (재점검기간)		~		
점검항목		점검 결과	정비 내용	점검항목		점검 결과	정비 내용
제 동 장 치	① 브레이크 캘리퍼 및 휠 실린더			주 행 장 치	⑦ 축 및 구성품		
	② 브레이크 슈 및 라이닝(패드)				⑧ 바퀴(타이어 및 휠)		
	③ 에스캡 샤프트				⑨ 차축 허브 구성부품		
	④ 브레이크 드럼(디스크)						
	⑤ 호스(유압/공압)						
	⑥ 브레이크 챔버(공압식)						
주 : 점검결과에는 양호/불량을 기호로 기입하고, 정비내용에는 수리/교환을 기호(문자)로 기입할 것				양호 V	불량 X	수리 ○	교 환 신 품 이 외 RN R
최종 결과	부적합		정비권고		종합 판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정기점검기록부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정비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정비업체명:

(고유번호:

)

인

유의사항

- 점검결과는 적합이므로, 다음 정기점검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전 90일, 후 31일까지입니다.
- 점검결과는 부적합이므로, 재점검기간까지 재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점검 대상 자동차는 재점검 기간 내에 재점검을 받아야 하며, 재점검 기간 경과 시 정기점검 미수검 과태료 및 점검 재신청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9조 (정기점검의 대상)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화물·특수자동차 중에 별표 1의 규모별 세부기준에 의하여 대형에 속하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가변축이 설치된 차령 8년 이상(차령 7년 경과)인 자동차를 말한다.</u>
<u><신 설></u>	<u>제60조 (정기점검의 기준 및 신청) ①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정기점검은 법 제53조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이하 “정기점검 시행자”라 한다)가 그 사업장 안에서 시행하며, 점검 항목 및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정기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시행자에게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고 해</u>

<신 설>

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정기점검 시행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60조의2(정기점검의 실시 등)

①대형 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정비시설을 갖춘 정기점검 시행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정기점검 신청을 받은 경우 제60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정기점검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점검 결과를 자동차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정기점검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 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적합 판정을 하고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1. 제동장치

가. 브레이크캘리퍼의 균열, 심한 부식, 마모

나. 브레이크캘리퍼의 피스톤 및 가이드로드의 고착

다. 브레이크 드럼(디스크)의 균열, 심한 부식, 마모, 열변형

라. 라이닝(패드)의 균열, 심한 부식, 마모, 열변형

마. 휠실린더의 피스톤 고착, 누유 및 더스트 부트 파손

바. 브레이크 슈의 균열, 심한 부식, 마모, 열변형

사. 브레이크 슈의 캠롤러, 클립, 리턴스프링, 고정핀의 마모, 변형

아. 에스캠샤프트의 고착 및 변형

자. 브레이크챔버의 미작동, 변형, 균열, 심한 부식, 공기압

누출

차. 호스(유압/공압)의 누유
및 누출

2. 주행장치

가. 차축의 균열 및 변형

나. 리프팅 암, 브라켓, 부싱
의 마모, 균열, 유격, 변형
다. 축 볼트, 너트의 고착 및
나사선 변형

라. 차축 스피들의 마모 및 열
변형

마. 허브베어링, 슬리브의 마
모, 심한 부식, 균열, 열변
형

바. 허브 오일셀 리테이너의
파손, 누유, 경화

사. 허브 베어링 록너트 및 링
의 마모, 심한 부식, 균열,
열변형

아. 바퀴(타이어 및 휠) 휠볼
트, 너트의 고착 및 나사선
변형

③정기점검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한 자동차
에 대해서는 별지 제36호의2서
식의 정기점검기록부에 그 사유

<신 설>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
해야 하며, 적합 판정(정비권고
사항을 포함한다)을 한 자동차
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정기
점검기록부를 발급하고 전산
정보처리조직에 다음 정기점
검 유효기간을 기재

2. 정비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
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정
기점검기록부에 정비권고사항
을 기재하여 발급

④정기점검 시행자는 제3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
체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
력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0조의3(정비 및 재점검) ①제6
0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점검
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3
6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점검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비를
하고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

만,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
폐차·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 인해 운행을 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5일
을 초과할 수 있다.

②재점검을 신청받은 정기점검
시행자는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다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정기점검 시행자는 자동차 소
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제60조의
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점
검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재점검을 정비와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날은 제외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⑤재점검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60조의2제3항
에 따라 정기점검기록부를 발급
받은 날에 정기점검을 받은 것
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제60조의4(점검장면의 영상관리)

①정기점검 시행자는 정기점검 및 재점검의 실시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된 점검장면을 2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촬영된 점검장면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정기점검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 및 재점검의 실시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 또는 뒷면 전체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치가 분해된 상태에서의 점검장면을 일시(분 단위까지 표시)와 장소(GPS 좌표)가 포함되도록 각각 촬영해야 한다.

1. 좌·우 제동장치의 드럼 또는 디스크 장치
2. 좌·우 주행장치의 허브베어링

제61조(정기점검의 유효기간 등)

①정기점검의 유효기간은 정기점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재점검기간 내에 적합 판정

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1년
으로 한다. 다만, 가변축 일체
(차축 등이 포함된 가변축 어셈
블리)를 법 제30조, 제30조의5,
제34조의3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신품으로 정비한 경우에는 유효
기간을 5년으로 한다.

②정기점검의 유효기간 만료일
은 제59조에 따라 정기점검의
대상이 된 해에 법 제43조제1항
제2호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
에 따라 최초로 도래하는 검사
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다
만,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아 최
초로 도래하는 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종전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서 연도
는 현재 연도를 적용하고 월, 일
은 종전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
산한다.

1. 유효기간 만료일 이내 정기
점검을 받은 경우: 직전 정기
점검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신 설>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정기
점검(재점검)을 받은 날의 다
음 날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비를 받은 날의 다음 날

④정기점검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일(제61조의
2에 따라 정기점검 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내
에 정기점검에서 적합판정을 받
은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기점
검 유효기간 만료일(제61조의2
에 따라 정기점검 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의
정기점검 기간은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로 한다.

제61조의2(정기점검 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
청장은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
라 정기점검 유효기간을 연장하
거나 유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정기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점검을 유예할 것. 이 경우 대상자동차·유예기간 및 대상지역 등을 공고해야 한다.

2.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폐차·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자동차의 정기점검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점검을 유예할 것

3. 부품 수급 등 자동차제작사 등 또는 부품제작사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자동차의 정기점검 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정기점검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정기점검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정기점검 유효기간연장(점검유예)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자동차 소유자가 정기점검 유효기간 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여 정기점검 유효기간 내에 점검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 정기점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점검은 연장된 정기점검 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1. 법 제37조 제2항후단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신 설>

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신
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휴업신
고를 한 경우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정
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61조의3(정기점검기간 경과의
통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은 등록된 자동차 중 제61조제3
항 및 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기
간이 경과된 자동차를 조사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그 소
유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한다.

1. 정기점검기간이 지난 사실
2. 정기점검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 및 그 신청방법
3.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
액 및 근거 법규

제63조의2(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점
검·검사명령) ①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은 제61조제3항 및 제

① · ② (생략)	<u>4항 따른 정기점검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명해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한다.</u> ② · 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제64조(운행정지명령)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부착된 자동차 운행정지표지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되며,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떼어내지 못한다. <u><신설></u>	제64조(운행정지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신설></u> 1. (생략) 2. · 3. (생략) 제116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전송 의무) ①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법 제5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신고를 한 자를	<u>1. 법 제36조의2에 따른 정기점검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u> <u>1의2.</u> (현행 제1호와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제116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전송 의무) ① ----- ----- ----- ----- -----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전송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생략) 2. 자동차정비업자: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u>점검·정비명세서</u>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 차. (생략) 카. 별표 21의6에 따른 작업 내용 <u>구분</u> 3.·4. (생략) ②·③ (생략) 제137조(정비요금 등)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요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u><신설></u> 2. ~ 6. (생략) ② (생략) 제150조(전산처리하는 업무) ①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1. (현행과 같음) 2. ----- ----- <u>점검·정비명세서 및 별지제36호의2 서식의 정기점검기록부</u> -----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 ---- <u>구분 및 별지 제36호의2의 정기점검기록부</u> 3.·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7조(정비요금 등) ①----- ----- ----- -----. 1. <u>정기점검 요금 : 정기점검에 소요되는 비용</u>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50조(전산처리하는 업무) ①-- ----- ----- ---
--	---

1. ~ 6의3. (생략) <u><신설></u> 7의2. ~ 9. (생략) ②·③ (생략)	1. ~ 6의3. (현행과 같음) <u>7. 법 제36조의2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의 기록에 관한 업무</u> 7의2. ~ 9.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